

##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0. 31.

### 하동군의회의회장 강 대 선

1. 조례명: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산업재해율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비롯하여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하동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상담
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